

(붙임 1)

2023년 유제품개발 ·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4.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사업2팀

1. 사업신청

신청기한 : '23.5.12(금)까지

사업대상자 :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유가공업·집유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허가 받은 영업자

* 국내산 치즈 생산업체의 경우 우선지원

-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보완하려는 자

- 단,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신고한 영업자

* 치즈공방 : 원유를 원료로 소비지(消費地)에서 소비자에게 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을 제공하는 시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

용자 조건(용자비율, 금리, 상환기간)

- 용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변동금리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투입계획 : 총 한도 14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신청대상자별 신청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

* 단, 치즈공방은 7억원(신청자당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낙농진흥회 사업본부 사업2팀

○ (주소) 세종시 가림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3층 301호 (우)30121

- Tel. 044-330-2052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시설자금) (별지1) 1부

- 신용조사서(별지2) 1부(사업희망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사업계획서(별지3) 1부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개요·계획내용, 자금조달 계획,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일정,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산출내역 1부(별지3-1), 유제품가격 변동현황 1부(별지3-2),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1부(별지3-3), 유가공업 영업허가서(집유업만 영위시 집유업 영업허가증 사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증 사본) 1부 첨부

- 대출신청자료(별지4) 1부

(단, 집유장 HACCP 시설은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5개년 운영수지분석 생략 가능)

- 사업자현황 증빙서류[업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생산자: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 소규모 목장형유가공업 등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유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

-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각1부

- 최근 2회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각 1부(경영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과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용자를 지원받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는 업체는 과거의 용자금 집행실적(일자, 금액, 용도, 별지 5) 제출

※ 최근 10년 이내 자금지원을 받은 대상자만 작성 및 제출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별첨) 1부

2.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사업신청서 검토 및 평가

- (낙농진흥회) 신청조직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 제출
 - 낙농진흥회는 낙농관련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자 평가 실시
 - 사업시행지침 또는 사업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평가 결과 보고

- (낙농진흥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능토록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낙농진흥회는 종합 의견서(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검토내역) 및 채무변제능력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1차 선정해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조직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현황 등) 사본 첨부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선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낙농진흥회 의견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
 - 시설개요·계획·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사업시행 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 구비서류 검토(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신용조사서에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시행이 어려운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외
 - 단, 집유장 HACCP시설은 원료유 확보·판매계획, 운영수지 분석(5개년) 생략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식품부) 당해연도 사업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비 배정
 - 사업시행지침 중 변경사항을 낙농진흥회에 통보(연중 수시)
- 낙농진흥회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
 - 사업대상자가 사업시행지침의 자금용도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을 집행토록 관리·확인
 -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낙농진흥회에서 검토(사업목적 달성여부,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 보고

4. 자금배정 단계

- (신청조직) 사업대상자의 사업비는 낙농진흥회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 취급기관에서 집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낙농진흥회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 요구
 - 자금배정 요구시 제출서류(기성고 자료)는 진흥회와 대출은행에 동시 통보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제출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낙농진흥회에 대출실행 내역 보고
 - 토목·건축 공사 자금 집행시 경쟁 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낙농진흥회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관계관이 공사 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낙농진흥회)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계약서 및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징구 및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 (농식품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제)

《사후관리》

- (낙농진흥회)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
 -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 점검)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자금용도 준수 여부 점검) 매년 수시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대출금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자금집행 완료 등 사업완료시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완료 보고하며,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현황을 수시 체크하여 업체부도,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포기서 제출(보고)

□ 자금관리주체(대출취급기관)

-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집행 요건·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 집행

-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또는 낙농진흥회에 현지 점검 및 보고 요청

- 낙농진흥회 현지점검 결과, 제제 사항 발견시 반드시 현지점검 실시

《제재》

□ 낙농진흥회

- (허위자료 제출업체) 낙농진흥회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거나,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자금용도 준수 여부 점검) 낙농진흥회는 매년 수시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및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농식품부 등 사업자금 관리자와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 (환류)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유제품개발 · 생산시설 사업계획서

1. 개요

- 사업추진 주체 :
 - 사업대상 유가공시설(허가번호) :
- 사업추진자 :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경력) 유가공업 운영 년 등
- 연락처 : (담당자 직 · 성명 · 전화 · 이메일 등)
- 사업추진 소재지 : (주소)
(부지 · 입지 여건) 인허가 추진사항 등
- 신규사업 총 사업비(백만원) : (음자 : , 자부담 :)
- 신규사업 설비능력
 - 유제품 생산능력(톤/일) :
 - 해당 유가공 시설의 최근 3년간 생산실적(톤/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도	비고
합계			
•			
•			

3. 사업효과

-

4. 기타 관련자료(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 1부(별지3-1)
- 유제품 가격 변동현황(별지3-2)
- 사업계획서 첨부자료(별지3-3)
- 사업시행일정 1부
- 작업공정 흐름도 1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 전 · 후 작업장 평면도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유가공업 영업허가서(집유업만 영위시 집유업 영업허가증 사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증) 1부

사업비 산출내역

업체명 :

전체

(단위 : 백만원)

구분		우유	발효유	치즈	분유	유음료	기타 유제품	공무	계
공장명	시설개보수								0
	시설확장								0
	신규시설								0
소계		0	0	0	0	0	0	0	0
공장명	시설개보수								0
	시설확장								0
	신규시설								0
소계		0	0	0	0	0	0	0	0

우유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공장명	시설개보수		
	시설확장		
	신규시설		
계			0

발효유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공장명	시설개보수		
	시설확장		
	신규시설		
계			0

○ 치즈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공장명	시설개보수		
	시설확장		
	신규시설		
계			0

○ 유음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공장명	시설개보수		
	시설확장		
	신규시설		
계			0

○ 기타 유제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공장명	시설개보수		
	시설확장		
	신규시설		
계			0

○ 공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공장명	시설개보수		
	시설확장		
	신규시설		
계			0

<별지 3-2>

유제품가격 변동현황

□ 업체명 :

(단위 : ml, 원, 소비자가 기준)

업체별	규격(ml)	제품명	'21.12월말 (A)	'22.6월말 (B)	'22.12현재 (C)	증감 (C-B)	비고
업체명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1. 업체명 :

2. 원료유 확보 및 판매계획

가. 원유 확보계획

(단위 : 톤/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계
○ 자체농가				
○ 조합구입				
○ 진흥회구입				
계				

나. 원유 판매계획

구 분	가정대리점	유통대리점	기타	계
개 소				
매출액(억원)				

3. 원유 구입량(낙농조합은 집유실적)

(단위 : 톤/일)

구 분	원유사용량		매출현황(억원)				
	진흥회 구입	자체및 조합구입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율	'22년	전년대비 증감율
'22년실적							
'23년계획							

4. 유가공장 현황

사업장 규모	저유능력	집유량(생산량)	종사자수		
	톤	톤/일			
유제품 생산현황	음용유		발효유		
	백색시유	가공유	액상	호상	드링크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치즈		분유		기타
자연	가공	전지	탈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 유제품 생산현황은 유제품 종류별 '22년 일평균 생산량을 기재(원유환산 기준)

5. 운영수지 분석(5개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비 고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농특회계) 용자 (이차보전)	지방비	자담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용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예금 현황			용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유제품개발·생산시설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신청시 미제출, 선정 사업자만 분기별로 작성후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획	실적	%	계 획			실 적				
						계	용자(A)	자담	계	용자(B)	자담		
가공장 개보수(예)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소 계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기타

- 사업완료시 시설 사진, 관련허가서류, 등기서류, 신축 설비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준수사항 이행 동의서

본인은 2023년 축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관련 규정, 사업 시행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사후 점검 시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자 선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자금 회수
 2. 사후 집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하는 축산물가격비교플랫폼 구축을 위한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 협조사항: 업체에서 사용 중인 전자저울 또는 POS시스템의 품목별 가격자료 연동 모듈 설치(설치가 불가능한 업체는 품목별 가격자료 수동입력 또는 팩스전송 등)

향후, 사업지침에 위배되거나, 제출된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사업자 성명: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사업계획서 사업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자료

- 사업효과 * 사업효과는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추상적 표현은 자제
 -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 ⇒ 경제·산업적 측면 : 자동화 시설 구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모

구 분	도입 전(A)	도입 후(B)	증감(B-A)	비 고
생산개수(개/hour)	10,000	15,000	5,000	
원유처리량(l /hour)	10,000	12,000	2,000	

- ⇒ 재정적 측면 : 자동화 시설 구축에 따른 운영시간 축소로 10.8억원의 공장 가동비용 감소
 - 기존 : 72억원(연간 공장 가동 일수 300일 × 가동시간 12시간 × 시간당 가동비용 2,000천원)
 - 변경 : 61.2억원(연간 공장 가동 일수 300일 × 가동시간 12시간 × 시간당 가동비용 1,700천원)

구 분	도입 전(A)	도입 후(B)	증감(B-A)	비 고
가동비용(천원/hour)	2,000	1,700	300	

- ⇒ 품질 측면
 - 신축설비 도입으로 기계 노후화에 따른 품질·인적·기계 사고 우려 해소
 - 기존 설비 대비 제품 불량률 감소($\Delta 0.15\%$) 효과
 - * 예상 수치 : 도입 전 불량률 0.2%(20개 발생/10천개) → 도입 후 0.05%(5개 발생/10천개)
- 시설설비 공정도
 - 시설설비 설치 전·후 비교 이미지 첨부
 - 설비 평면도
 - 설비 공정 설명 자료(용어 정의, 설비 공정에 대한 설명 필요)
- 자금조달 계획
-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증빙서류 포함)